상속세의 계산과 납부

이 진 웅 〈공인 회계사〉

1. 상속세액의 계산

상속세액은 먼저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일반공제와 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림지공제 등의 여러 가지 공제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다.

상기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은 바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설명하는 각종 세액공제와 가산세가 가감된 후의 금액을 납부한다.

가. 공제세액

(1) 단기상속공제

상속개시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먼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재산중 또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며, 10년 이내 상속이 재개된 경우 그 상속세의 반액을 면제한다.

(2) 국외납부 상속세액 공제

국외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 소재국에서 미리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3) 증여세액 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그런데 이 증여자산에 대하여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므로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4) 문화재에 대한 징수유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또는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자료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때는 그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한다. 그러나 문화재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유상으로 문화재를 처분하였을 때 징수유예된 상속세를 즉시 징수한다.

(5) 신고공제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9개월임)

이 법정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 할 경우 신고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액 및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의 10 % 를 공제한다.

나. 가산세

(1)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를 가산한다.

(2)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 또는 미달한 세금의 10 % 와 세금을 내는 날까지 연 14.6 % 의 이자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더 물게 된다. (그러나 가산세가 전부해서 30 % 는 넘지 못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천만원 이하	10 %	—
2억원 이하	20 %	2백만원
5억원 이하	30 %	2천2백만원
10억원 이하	40 %	7천2백만원
10억원 초과	55 %	2억2천2백만원

상속세 계산사례

상속재산 : 주택 1억 5천만원, 토지 4억 3천만원, 합계 5억 8천만원, 채무 1천 5백만원, 증빙서류있는 장례비용 3백만원, 각종 공과금 2백만원, 배우자(결혼년수 20년)와 자녀 2명이(24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계산내용〉

(1) 상속세 과세가액 : 5억6천만원

상속재산 5억 8천만원
채무 1천 5백만원
장례비용 3백만원
공과금 2백만원

(2) 기초공제 : 6천만원

(3) 인적공제 : 2억 6천 6백만원

• 배우자공제 2억 2천만원 =1억+600만원×20(결혼년수)

• 자녀공제 4천만원 (자녀 1인당 2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6백만원 (연간 3백만원×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4) 주택상속공제 : 1억원

(5) 과세표준 : (1)-(2)-(3)-(4)= 1억 3천 4백만원

(6) 산출세액 : 1억 3천 4백만×세율 20 % - 누진공세 2백만원 =2천4백 80만원

(7) 납부할 상속세액 : 2천2백32만원(자진신고로 10% 공제시)

2.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가. 신고

상속세의 신고, 납부의무자는 상속인이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 이라면 그중에 한 명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다른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속세의 신고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 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9 개월)이므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공제(10 %)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20 % 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를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만약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의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며 재산이 수 개의 소재지에 있는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나. 납부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은 대개 부동산이므로 상속 당시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세의 납부에는 연부납부나 물납의 규정을 두어 일시적인 현금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연부납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납세자의 연부납부 신청은 자진신고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에 상속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며,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통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연부납부의 허가를 서면으로 상속인에게 통지한다.

연부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속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하며 연부납부기한은 3년 (사업상속의 경우 5년)이내로 한다.

연부납부 경우 본세는 연부납부기한에 평균하여 납부하고 이자는 연부납부 금액에 대하여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 (연 10.95%)이 가산된다.

(2) 물납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이상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백40만원 이상될 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낼 수 있다.

이경우 물납세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물납시 그 평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평가액으로 하며 물납의 신청과 허가는 연부납부의 경우와 같다.